(입소계약에 관한 사항)①계약기간은 시설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급여서비스를 제공하고, 서비스의 종료는 입소자 본인 및 보호자의 의사와 기타 사유 등을 통해 서비스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.

②시설계약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의 시설입소를 통하여 다양한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.

③월 이용료와 기타 비용부담액은 당해연도 고시금액에 의하며, 장기요양보험수가변동에 따라 개인부담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, 월이용료는 전달의 이용료를 해당월의 10일까지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 월 이용료는 카드나 현금납부, 이용료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.

④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 및 기타비용은 〔별표3과 같이 한다.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.

⑤기타 비용부담액(비급여항목):시설은 이용노인에 대한이용료 외 기타비용부담액(비급여항목)을 청구 할 수 있는데 비급여 항목은 다음과 같다.

1.식사 재료비

2.이.미용 서비스비용(단, 자원봉사자 및 시설 직원이 직접 제공 시 별도로 청구는하지 않는다.)

3.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

4.경관급 이용자에 대해 제공되는 유동식 및 기타비용을 실비로 청구한다.

5.시설은 입소자(이용자)에게 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으로서 입소자 (이용자)는 시설을 이용하면서 의식주 서비스와 각종 프로그램(간호,재활,신체기능회복증진 등)을 이용할 수 있다.

(급여제공자,입소자,보호자(신원인수인)의 권리와 의무) 급여제공자와 입소자 신원인수인(보호자)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.

1. 급여제공자의 의무

가.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건강관리 협조의무(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 간호,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)질 높은
서비스제공의무(단,병원입원시 간호,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)

나. 이용자의 신변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(단,연락하였으나 수용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
다.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
라.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제공 의무

마.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

바. 기타 시설 생활규칙 이행 의무

2. 입소자의 의무

가. 월 이용료(본인부담금,비급여 등) 납부 의무

나.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
다.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
라. 각종 프로그램 참여의무
마.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바.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

3.신원인수인(보호자)의 권리와 의무
가. 입소자의 시설 입·퇴소 결정, 시설 내 교육. 프로그램참여결정, 시설이용 시 진료위임 및 동의, 주보호자 변경 등 입소자에 대한 주보호자로서의 모든 권리나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
나.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
다.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
라.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을 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 의무 하는 권리와 의무

(계약의 해제)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1.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2.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3.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[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대한 법률]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때
4.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5.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6.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7. 10일 이상 입원 또는 외박을 하였을 때. 다만,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(보험료 포함)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.
8. 입소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누락하였을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때
9. 이용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퇴소 신청을 하였을 때
10.입소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11.입소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
(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사항)①본 시설의 계획에 의해 실시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진행하되, 이용료 및 기타

비용부담액과 그 지불방법에 대하여 입소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1.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
2.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
3.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할 때

②국민기초수급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청구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입소자본인 또는 그 가족의 요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서비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③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발생은 이용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